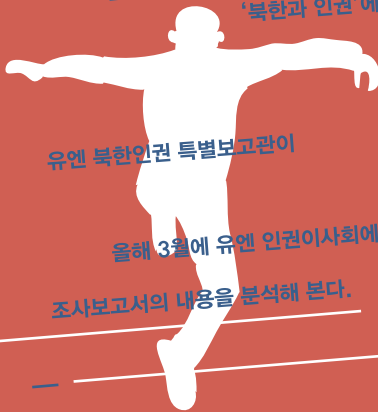


북한과 인권

CREDO 매거진 창간호

‘북한과 인권’에서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올해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

UN 인권이사회진정제도 비교

결의안 5/1 진정제도

- 국내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
- 개인, 단체, NGO 진정 가능

특별절차 진정제도

- 국내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에 제출
- 전문가들의 지속적 모니터링, 조사, 권고 제시

1. 유엔 특별보고관이란?

Special Rapporteur

유엔 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 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로,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이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유엔 회원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2가지 진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른 진정제도인데, 1970년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마련된 인권침해 조사절차인 1503제도를 2007년에 개편한 것이다. 이 진정제도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진정을 할 수 있지만, 소송 등 국내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 단체 또는 NGO만이 진정을 할 수 있다.

둘째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다루는 진정절차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진정제도가 있다.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특별절차 임무 수임자(mandate holder)들은 해당 인권분야에서 최고의 지성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들로서 이들의 견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주어진 임무분야에서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권고를 제시한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는 총 56개의 특별절차를 설치하고 있는데, ‘특별절차’는 임무 범위가 정해진 기구(body)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 특별절차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전문가를 통칭하는 의미로 ‘임무 수임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현재 설치된 56개 특별절차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 특별절차의 임무 수임자는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 실무그룹 위원(member of the Working Group)으로 각각 호칭된다. 이러한 특별절차는 주어진 임무가 특정 국가의 제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경우 ‘국별 특별절차(country mandate)’,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경우 ‘주제별 특별절차(thematic mandate)’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국별 특별절차이고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주제별 특별절차이다.

특별절차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정부에 제기된 인권침해를 예방·중단하거나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데, <자의적 구급에 관한 실무그룹> 등 몇몇 특별절차의 경우 진정의 내용을 심사한 후 해당 정부에 평가서를 전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은 진정 내용을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총회의 연례회의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보고서에 국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로 정치적 압력 효과를 발휘한다. 특별보고관들이나 실무그룹들이 인권침해 내용을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해당 정부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고, 또한, 특별보고관들이 인권이사회에 발송된 진정과 답변을 보고함으로써 법과 정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명된 것은 2004년부터이다. 임기는 1년으로,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초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태국 출신의 비릿 문타폰 보고관이었는데,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인권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처음부터 방북 요청을 거부당한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대신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을 방문해 탈북자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2009년 보고서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비극은 고위층 인사들이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시키면서 생존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유린이 비정상적인 북한 체제에서 비롯됐으며,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에 성립한다는 것을 밝힌 점이 초대 특별보고관의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0년 문타폰 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마루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침해자의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을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0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됐고, 다루스만 보고관도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그룹이 책임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틀을 마련한 것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루스만 보고관의 후임으로 2016년 11월에 임명된 현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미 아르헨티나의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지난 7월에 방한했었던 키타나 보고관은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과 앞으로 어떤 협정을 하든 북한인권 개선 문구가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2. 북한내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내용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3월 9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내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먼저, 서문에서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특별보고관은 해당국 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방문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비릿 문타폰

(2004~2010, 태국)

- 북한 고위층의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밝힘

마루주키 다루스만

(2010~2016, 인도네시아)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한 반인도적 범죄 조사 및 책임규명 방법 모색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2016~현재, 아르헨티나)

-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북한내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1) 시민적/정치적 권리

- 북한 정치범수용소
- 해외 강제 송환된 여성
- 북한 내 체포 및 구금 절차 부재
- 납치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식량권
- 국가 배급체계의 무너짐
- 북한 내 핵 활동 방식 등 낙진 토양과 작물 오염

3) 유엔과의 협력

- 미성년자 고문, 굴욕적 대우
- 강간, 성폭력 및 인신매매



다. 보고서는 “북한은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당국 정부와 소통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고 직접적인 비판을 하면서도, 제네바와 뉴욕에 상주하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 당국과 공적으로 접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보고서의 ‘정치 및 안보 전개 상황’ 부분에서는 “북한이 탄도 및 핵 기술을 활용하여 지난 30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최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시행했다. 북한 최고지도자는 신년 연설에서 대륙 간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천명했다.” 고 전제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으나 안보 상황은 여전히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동적이며 취약하다고 내다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작년 기생충 감염 논란으로 이슈가 되었던 귀순 북한 군인에 대해 특별히 언급을 한 대목이다. 보고서는 “한 명은 2017년 11월 14일 휴전선을 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총상을 입었다. 해당 군인 탈북 장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특히 군인이 자국을 이탈하려고 시도할 때 상당한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고 평가했다.

특별보고관은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남북 간 소통 창구가 2년 만인 2018년 1월 3일 공식으로 복구된 것을 유의미한 진전으로 보면서도, 남북 정부가 향후 논의 및 협력 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내 시급한 인권 문제를 해결토록 남북 양자 간 기술 지원 가능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못 했고, 정상회담 후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도 누락된 것은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촉구와 큰 괴리가 있는 부분이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 특별보고관은 탈북자 증언을 주 정보 출처로 활용하였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수행한 별도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했음을 밝히고 있다. 여전히 북한 내에서의 직접 조사 보다는 간접적인 조사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 시민적·정치적 권리

특별보고관은 북한 억류자들과 관련하여 “평양에 구금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여섯 명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영사 지원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로, 무엇보다도 영사관 관계자와 면담하거나 가족과 연락하도록 허용하고 구금자가 자신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고 하여 억류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송환 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웹비어가 평양에 위치한 감옥에서 식중독에 걸리고 혼수상태에 빠진 과정을 북한이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수감자에게 적절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서는 “정치범 수용소가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수감자 상황을 파악할만한 정보 수집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는 점을 전제하면서, 교화소에 구금됐던 북한 여성이 시설 내 식수 등 기본 환경이 열악하다고 증언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여성은, “아침에 깨면 무엇보다도 물을 쓰기가 어려워요. 30개 감방 중 세 곳 혹은 네 곳에만 수도물이 나오고 아침에 제한된 시간 동안만 수도물을 쓸 수 있어요” 라고 증언을 하였다.

미결구금 상태 수감자로 특히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라면 고문을 당할 위험이 높고, 중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집결소에서 심문을 받을 때 고문 및 모멸적인 처우를 받는 양상이 확인됐다는 점도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이들 여성 대다수는 밀수

경로를 사용하여 장사를 하는데, 이 밀수 경로는 인신매매망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인신매매를 금하는 법이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인신매매법이 여성을 유인하여 중국에서 결혼이나 성매매를 강제하기가 용이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여성은 2016년 5월 구금됐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 하였다. “중국에서 복송되고 나서 헤산시 성후동에 위치한 보위부 집결소로 보내졌어요. 건물에 남자 여자 모두 있었지만 대다수 여자입니다. 북에서는 국가 기관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여자가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 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시설 내 구금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인간적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동물로 취급하고 식사로는 강냉이랑 엉터리로 만든 말린 시래기국만 줍니다. 화장실은 열댓명이 함께 쓰는 방 안에 있어요. 움직일 수 없고 같은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면 맞아요.”

북한 내 체포 및 구금 절차는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 문제 중 하나인데, 북한 주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적법 절차도 준수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북한에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더욱이 교도관 학대로부터 수감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기술하였다.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특별보고관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일본 국적자 17명 납치건은 2018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미제 상태이고, 여기에 더해 북한의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본 국적자 사례가 883건 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 516명을 납치하였으나 아직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보고서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부분에서 특별보고관은 경제 계획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연관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공포와 차별이 있는 환경이라면 경제 성장으로 소수 특권층만 혜택을 받고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질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식량권(Right to Food)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은 만성적으로 식량 불안정을 겪으며 식량 불안정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하였다.

1990년대 기근 사태 후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진 결과 주민 식량 접근성이 저하됐을 뿐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식량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도 약화됐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엔 상주조정실 Country Team이 2017년 3월 실시한 최신 평가에 따르면 인구 41%에 해당하는

105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는 주민 수는 약 1800만 명인데, 배급량은 정부 목표치인 하루 인당 573g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9월 북한을 이탈한 한 남성은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식량을 받지 못하며 자신은 중국과 밀수로 돈을 벌며 식량을 구했다고 특별보고관에게 증언하였다. 그는 “제가 알기로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정도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식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친척을 통해서나 장사를 해서 식량을 구합니다. 상급 정부 관계자 같이 간부나 되어야 식량 배급을 받습니다. 간부 자식은 건강합니다. 우리들과 달리 식량값이나 옷값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식량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북한 주민은 진퇴양난에 처했는데, 국가가 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생활필수품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 차원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 주도 공식 조치를 우회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식량권 관련 특이한 점은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핵 활동으로 방사능 낙진이 토양과 작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당국은 농업 부문이 핵 및 방사능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장 취약함을 인지하고, 핵 및 방사능 사고가 식량 접근성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북한 핵실험장 갱도 붕괴로 인한 북한 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재차 확인이 된 것이다.

주거권에 대해서는 량강도 지역 주민이 산업 개발 과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했음에도, 당국은 퇴거된 주민을 공장 기숙사나 친척집에 거주하도록 했을 뿐 장기적인 재정착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보고하였다.

(3) 유엔과의 협력

특별보고관은 국제인권기구의 보고서들도 인용을 하였는데,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의 법률과 공공 정책이 미성년자를 고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고, 특히 외국에서 강제 송환됐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된 아동이 처한 상황을 지적했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7년에 북한이 제출한 제2차~제4차 통합 정기 보고서 관련

최종견해에서, 북한이 강간을 비롯하여 기타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인신매매죄 관련 법 조항이 없음을 지적했다고 보고하였다.

3. 보고서의 결론 및 권고

(1) 북한에 대한 권고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고 판단하며, 대규모 교정 시설이 존재하고, 모든 형태의 표현, 이동 및 정보 접근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결과로 북한 주민은 국가를 두려워하고, 정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지만 주민은 이들의 처분에 휘둘리고 지방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지하 경제 때문에 여성이 인신매매에 더욱 취약해지며, 해외에서 송환된 여성은 고문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하였다. 아울러, 북한 내 인권 침해가 심각하며 대규모로 이루어졌기에, 북한 당국 기관 내 책임 규명 문화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과 구금 시설 내 구금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중단하도록 효과적인 정책 변화를 채택할 것.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 정보 접근권을 비롯하여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을 것.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 대한민국 및 기타 국가 국적자 납치 건을 즉각 조사하며, 외국인 납치 관련 행위자에게 지속적으로 협조와 중재를 요구할 것.
- 북한 주민은 국가 배급 제도로부터 식량 배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해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엔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제도를 개혁할 것.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근거하여 구금된 대한민국 국적자 여섯 명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며, 하루 빨리 이들을 석방할 것.
- 특별보고관 위임 권한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특별보고관과의 대화 절차를 밟을 것.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주제별 위임 권한 수행자가 북한에 방문하도록 초대할 것.

(2)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보고서에는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사항도 담겨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 지원 전략 고려 시 인권 보호 우려를 반영할 것.
- 대한민국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돕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
-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

그러나,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북한 억류자 문제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를 파악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고에 역행하여 통일부는 지난 6월에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별보고관의 주요 권고 내용

1. 고문, 비인도적대우, 학대 중단
2. 자유권 침해행위 중지
3. 납치 건 즉각 조사, 협력, 중재
4. 식량배급 받을 권리 보장
5. 구금된 대한민국 국적자 석방
6. 특별보고관 권한 인정 촉구
7. 특별보고관 방북 초대 요청

4. 종합평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북 조사가 아닌 탈북자 증언 청취, 북한 인권단체 면담 등의 간접 조사 결과에 의존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유의미한 보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북한 억류자 문제가 포함된 점이다.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에서 설명한 ‘특별절차상의 긴급조치 진정제도’를 활용하여,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그리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3곳에 북한 억류자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가 이런 진정을 한 것은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기구가 이와 같은 진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 발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굳이 유엔 산하 조직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인권위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을 조사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기에 이런 진정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국제사회에 북한 억류자 문제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진정 제기 후, 2017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억류자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되어, 북한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 보호,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 허용을 촉구하였다. 올해 3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7차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북한 억류자 문제가 포함되었고, 북한이 자국 내 억류자들에 대한 영사 접견 등 보호와 생사 확인,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고, 국내외의 인권침해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6명이 직접 언급이 되었고, 이들의 석방을 북한 당국에 촉구를 한 것이다. 특별절차 진정의 또 다른 결과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중 북한 지원 전략 고려 시 인권 보호 우려를 반영하라는 요구는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 지원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필요한 지원을 하더라도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전략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게 북한인권법의 이행도 촉구를 하였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